계 약 규 정

제정 2013. 11. 29. 규정 제18호
개정 2015. 09. 09. 규정 제33호
개정 2016. 11. 07. 규정 제66호
개정 2017. 09. 15. 규정 제84호
개정 2022. 04. 19. 규정 제16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식회사(이하 “회사” 이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07.)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가 자연인 또는 법인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법령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며, 일반회계 및 예산에 관하여는 회계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6.11.07.)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 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예정가격” 이란 입찰이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갖춰 두는 가액(價額)으로서 제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3. “고시금액” 이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입찰 적용대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6.11.07.)

4. “공사이행보증서” 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낼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제5조(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2(청렴서약제)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68조에 따른 감독, 제69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6.11.07.)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①사장은 계약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담당자, 서울교통공사사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09.15.)

②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사무의 위탁에 있어서 위탁대상 및 계약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계상(計上)된 금액이나 또는 해당 목적물의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가 공급하는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한다.

1. 단가계약의 경우 :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이하 "제조·구매· 복구 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2.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개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나. 해당 회계연도 또는 그 직후 12개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3. 물품이나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

 가.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4.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

달 가능한 금액

제8조(예정가격 등의 비치)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둘 것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5조 제1항 제4호·6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제38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1조 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제90조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11.07.)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예산상의 총 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실례가격(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에서의 거래실례가격)(개정 2016.11.07.)

가.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개정 2016.11.07.)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개정 2016.11.07.)

다.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개정 2016.11.07.)

2.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사장이 인정한 가격(개정 2015.09.09.)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 삭제(2016.11.07.)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7, 2017.09.15.)

④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정한다.(개정 2016.11.07.)

제11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에 의하되, 해당 거래실례가격에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11.07.)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4. 삭제(2016.11.07.)

②제10조 제1항 제3호에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 및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표준시장단가의 금액 적용 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정한다.(개정 2016.11.07.)

제12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공사·제조·구매(수입물품의 구매를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16.11.07.)

1.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3. 경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14조 제1항(제10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노무비·경비(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을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14조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

(개정 2016.11.07.)

②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신설 2016.11.07.)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2. 통관료
3. 보세창고료
4. 하역료
5. 국내운반비
6. 신용장개설수수료
7. 일반관리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합계액에 제14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8. 이윤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합계액에 제1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조서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신설 2016.11.07.)

④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비목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6.11.07.)

제13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사장이 별도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

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을 말한다.(개정 2015.09.09. 2016.11.07.)

2. 제16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따른 가격 (개정 2016.11.07.)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신설 2016.11.07.)

1.「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특별히 사용하려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제14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공사 : 100분의 6

2.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3.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4.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9

5.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6.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2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물품 외의 물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1 (개정 2016.11.07.)

12. 폐기물 처리·재활용 용역 : 100분의 10(신설 2016.11.07.)

13.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용역 : 100분의 9(신설 2016.11.07.)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 100분의 8(신설 2016.11.07.)

15.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 100분의 5(신설 2016.11.07.)

16. 장비 유지·보수 용역 : 100분의 10(신설 2016.11.07.)

17. 기타 용역 : 100분의 6(신설 2016.11.07.)

②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다만,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2016.11.07.)

1. 공사 : 100분의 15

2. 제조·구매 : 100분의 25

3.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4. 용역 : 100분의 10

제15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따라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성질 등이 특수하여 직접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3.「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4.「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원가계산을 의뢰한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이 규정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11.07.]

제16조(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감정가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정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3. 견적가격: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본조 신설 2016.11.07.]

제17조(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①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2.「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3.「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4.「관세법」에 따른 관세

5.「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②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합하여 그

예정가격을 계산한다. 이 경우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뺀 공급가액으로 하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다.

[본조 신설 2016.11.07.]

제18조(희망수량입찰 시 예정가격의 결정) ①제2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단가로 그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지출의 원인이 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의 경우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입찰에 부치려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따라 해당 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11.07.]

제19조(예정가격의 변경)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9조 제2항에 의한 재공고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제36조 제1항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3장 계약의 방법

제20조(계약의 방법)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16.11.07.)

제20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구매규격을 관련 업체에 사전공개하고 이를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수요물자·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인 물품·용역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사전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의 방법·내용·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6.11.07.]

제21조(경쟁방법)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은 입찰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산(動産)의 매각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규정에 따른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제22조(입찰의 성립)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개정 2015.09.09,2016.11.07,2017.09.15.)

제2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09.09. 2016.11.07.)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6.11.07.)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및 사회적 신인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달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6.11.07.)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2.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그 밖에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

④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한다.(개정 2016.11.07.)

⑤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6.11.07.)

제25조(공사의 입찰)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工種別)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그 밖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5.09.09. 2016.11.07.)

② 삭제(2016.11.07.)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에 따른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起算)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 제4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⑤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 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게 하되,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제2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7.)

⑥제5항에 따른 산출내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7.)

1. 물량내역서가 열람·교부된 공사(개정 2016.11.07.)
   가.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인 공사: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만을 적는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되,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한 부분은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물량내역서가 열람·교부되지 않은 공사: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여기에 단가를 적는다.

⑦장기계속공사(계속비에 의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⑧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총액으로 입찰을 실시하되,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공고 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5.09.09.)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물품과 용역을 통합발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④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제50조 제1항과 제51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 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 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7.)

⑤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입찰서로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표시하고,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7.)

⑥장기계속계약(계속비에 의한 제조 등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총제조물량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다량물품의 입찰) ①다량의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매각수량의 범위에서 수요자의 매수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1.07.)

②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1.07.)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6.11.07.)

1.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그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할 경우
2. 1인의 능력으로는 그 매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매각할 경우
3. 수인의 공급자 또는 매수자와 분할계약 하는 것이 가격 · 품질 그 밖의 조건에 있어서 회사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매각할 경우

제28조(2단계 입찰)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제28조의2에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11.07.)

②제1항의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게만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하여야 한다.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제28조의2에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과 가격입찰 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적격

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7.)

④사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의2(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 제2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본조 신설 2016.11.07.]

제2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6.11.07.)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3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제20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로 정한다.(개정 2016.11.07,2017.09.15.)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4. 삭제(2017.09.15.)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6. 추정가격이 다음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개정 2016.11.07,2017.09.15.)

가. 공사의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는 경우에는 10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억원, 다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10억원,「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공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5억원)(개정 2016.11.07.)

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의 경우에는「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

설기술용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다만,「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점검용역은 1억5천만원으로 한다.

다.「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 외의 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 등의 경우 5억원

7. 제31조에 따른 제한방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8.「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 공고한 물품을 제조 · 구매하는 경우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개정 2016.11.07.)

9.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재무상태

10.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개정 2017.09.15.)

가.「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

나. 삭제(2017.09.15.)

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개정 2016.11.07.)

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마.「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물품

(신설 2015.09.09.)

1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신설 2017.09.15.)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로서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44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제31조(공사의 성질별 · 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①사장은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입찰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 입찰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07.)

②사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등급별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하고 공사입찰 시마다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44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제한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7.)

④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입찰참가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07.)

제3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인 공

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개정 2016.11.07.)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4. 예정임차료의 연액(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연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이나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개정 2016.11.07.)

6.「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2호의 제품(개정 2017.09.15.)

7. 제20조와 제35조 1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개정 2016.11.07.)

8.「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개정 2016.11.07.)

9.「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신설 2015.09.09.)

10.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1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공고한 물품을「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1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사장의 요청으로「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신설 2017.09.15.)

제33조(지명입찰 대상자의 지명)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2조에 따라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 참가신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일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7.)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44조 각 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를 갈음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대상자를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유사물품의 복수입찰)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복수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16.11.07.)

제3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개정 2016.11.07.)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재난복구 등의 경우 (개정 2016.11.07.)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대하여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5.09.09.)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파.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신설 2016.11.07.)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개정 2016.11.07.)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개정 2016.11.07.)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개정 2016.11.07.)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개정 2016.11.07.)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개정 2016.11.07.)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개정 2016.11.07.)

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

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개정 2016.11.07.)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나.「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다.「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개정 2017.09.15.)

라.「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하며, 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6.11.07.)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받은 제품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4)「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7조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개정 2015.09.09.)

5)「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6)「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하기로 협약한 제품(개정 2016.11.07.)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나.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신설 2015.09.09.)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조문이동 2015.09.09.)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조문이동 2015.09.09.)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조문이동 2015.09.09.)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개정 2015.09.09.)

가. 삭제(2016.11.07.)

나.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조문이동 2015.09.09.)

다.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

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조문이동 2015.09.09.)

라.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회사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조문이동 2015.09.09.)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6호 나목, 같은 항 제7호 나목 및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7.)

1.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및 용역의 직접수행 가능 여부

제3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9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3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38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35조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36조 제1항 및 제3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개정 2016.11.07.)

3.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품질 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사장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적힌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8조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6.11.07.)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1.07.)

1.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을「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4.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⑤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6.11.07.)

제39조(수의계약내역의 공개) ①사장 및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월별 수의계약 내역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업명과 계약이행기간

2.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3. 예정가격(또는 예정금액)과 계약금액

4. 법령상 수의계약의 근거

5.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내용

②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내역을 공개할 때에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7.)

제40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6.11.07.)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41조(입찰공고)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7.)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방법에 의하여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사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16.11.07.)

③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加算)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입찰참가의 통지)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4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44조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11.07.)

제43조(입찰공고의 시기) ①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7.)

③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30일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40일(신설 2016.11.07.)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16.11.07.)

1. 제29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제2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및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격·기술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7.)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및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16.11.07.)

제44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51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5.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수입조치에 관한 사항
8. 낙찰자 결정방법(제50조 제1항 본문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개정 2016.11.07.)
9.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10.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11. 제47조 제4항에 따른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2.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장소와 교부비용

13.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14.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5. 제47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개정 2016.11.07.)

16. 제94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 및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신설 2016.11.07.)

17.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조문이동 2016.11.07.)

18.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조문이동 2016.11.07.)

제45조(입찰보증금)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7.)

③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내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7.)

1.「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 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2조 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3.「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개정 2015.09.09.)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라.「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마.「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바.「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사.「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자.「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차.「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카.「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개정 2015.09.09.)

파.「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하.「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거.「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너.「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개정 2016.11.07.)

더.「문화재수리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러.「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

머.「폐기물관리법」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신설 2016.11.07.)

버.「콘텐츠산업 진흥법」제20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신설 2016.11.07.)

5. 제1호에 규정된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④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

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라.「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마.「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바.「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아.「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시·도의 연구원

자.「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차.「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개정 2015.09.09.)

카.「지방공기업법」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신설 2015.09.09.)

타.「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 및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신설 2016.11.07.)

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 출자·출연 기관(신설 2016.11.07.)

6.「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골재채취법」,「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등의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개정 2016.11.07.)

6의2.「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6.11.07.)

7. 그 밖에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6.11.07.)

⑤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입찰보증금의 수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46조(입찰보증금의 수입조치)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회사에 수입조치 하여야 한다.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5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수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제45조 제3항 각 호의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보증기관 등에 통지하고 해당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5조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수입조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뜻과 함께 제45조 제5항에 따라 지급을 확약한 문서를 갖추어 해당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7.)

제47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사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3조 및 제30조에 따른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2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1.07.)

제48조(개찰과 낙찰선언)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③제47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찰과 낙찰선언을 한다.

제49조(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회사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따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1.07.)

제50조(지출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개정 2016.11.07.)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로서 물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납품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데에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 등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6.11.07.)
2. 제2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28조 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입찰자가 1인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개정 2016.11.07.)

②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51조(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방법 등) 삭제(2016.11.07.)

제51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과 기타 회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0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

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회사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6.11.07.)

② 삭제(2016.11.07.)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⑤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⑥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⑦제1항의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장이 정한 세부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사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7.)

제52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거나 뛰어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2015.09.09.)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4.「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6.「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7.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8. 기념탑, 위령탑, 조각상 등 예술성·창작성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형물 사업(개정 2016.11.07.)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사장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3조(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따라 품질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16.11.07.)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입찰 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54조(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제49조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개정 2016.11.07.)

제55조(다량물품을 제조·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27조 제2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56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입찰인 경우 : 입찰 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2.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제50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4.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57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7.)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전산장애 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07.)

③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조문이동 2016.11.07.)

제58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1.07.)

1.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59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8조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생략용 서식으로 작성하거나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제60조(청렴계약 이행)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임대 등의 입찰공고(수의계약)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별표3), 특수조건(별표4),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16호) 등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7.)

②제1항의 청렴계약이행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서약서에 따른 계약해지 또는 해제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경우 제재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개정 2016.11.07.)

제61조(계약보증금)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회사에 수입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수입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62조(계약의 이행보증)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에 따라 회사에 계약보증금을 수입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07.)

③사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⑤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할 때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⑥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원래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끝난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공사계약의 경우로서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3조(공사계약에서의 이행보증)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지정한 업체(이하 "보증이행업체"라 한다)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업체가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시에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④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6.11.07.)

제64조(계약보증금 납부방법) ①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45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2조 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45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계약보증금 면제) ①제6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5조 제4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이미 도입된 외자(外資)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그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제61조 제2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수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 조에서 "확약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약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07.)

제66조(계약보증금의 수입조치)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보증금을 제62조 제2항에 따라 회사에 수입조치 하여야 한다.

②장기계속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제87조 제3항 후단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2차 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회사에 수입조치 할 때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旣成)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相計)처리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5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07.)

④계약보증금을 수입조치할 경우에는 제46조(입찰보증금의 수입조치)를 준용한다.

⑤제89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회사에 귀속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11.07.)

제67조(손해보험의 가입)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②사장은 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8조(감독)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직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07.)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과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등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여야하는 공사계약(개정 2015.09.09.)
2.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감독을 할 수 없는 도급계약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되어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직원의 수(제1항 단서에 따른 계약 중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정해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監理員)의 수를 말한다)를 그 배치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6.11.07.)

③제2항에 따라 추가로 드는 감독비용 또는 감리비용은 해당 공사예산 중 낙찰차액(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말한다)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9조(검사)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직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1.07.)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 (개정 2016.11.07.)
2. 재질·성능 또는 규격 등의 검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②제1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조사설계 용역계약인 경우에는 그 용역계약의 상대자가 조사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를 함께 검사하여야 한다.

④기본설계(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 할 때에 실시설계 대상사업의 총사업비 산정이 적정한지를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6.11.07.)

⑤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조항이동 2016.11.07.)

⑥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2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한다.(조항이동 2016.11.07.)

⑦제71조 제4항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제68조에 따른 감독을 행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조항이동 2016.11.07.)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 3천만원미만의 계약 또는 매각계약,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등 검사조서의 작성이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조항이동 2016.11.07.)

⑨물품구매계약 또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비용과 검사로 인한 변형, 파손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신설 2016.11.07.)

⑩현장물품검사는 현장담당자인 팀장이 부분검수자가 되고 총괄검수자는 업무지원부처장이 지명할 수 있다.(신설 2015.09.09, 조항이동 2016.11.07.)

제70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제68조에 따른 감독의 직무와 제69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검사에서 감독을 하는 자 외의 자로 하여금 검

사를 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2.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등 해당 계약의 이행 후 지체 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계약금액이 3억원 이하인 물품의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4. 제6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사계약의 경우
5. 제69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제71조(대가의 지급)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금급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의한 대가는 제69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6.11.07.)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기성 부분 또는 기납(旣納)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에는 제69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대가 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 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7.)

⑥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5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⑦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기한 내에 대가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⑧동일한 계약에서 제7항에 따른 이자와 제95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은 상계(相計)할 수 있다.(신설 2016.11.07.)

⑨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조항이동 2016.11.07.)

제72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71조에 따른 대가 지급기한(회사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체결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71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해당 미지급금액 ×「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사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제73조(대가의 선납)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의 매각·임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11.07.)

제74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9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

서 별표 1의 공종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1.07.)

②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9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1.07.)

③장기계속공사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정한다.

제75조(하자검사)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74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09.15.)

1.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제79조에 따른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공사인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6조(하자보수보증금)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74조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

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 제4항 제1호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제77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77조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제69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고 이를 제74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7.)

④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계약별로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목적물에 대하여 제69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고 나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⑤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회사의 수입조치의 경우에는 제45조 제3항·제5항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제77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5.09.09.)

1. 철도, 댐, 터널, 철강교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 항만, 삭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사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 100분의 3

6. 수리, 가공, 구매, 용역: 100분의 2

②제7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개정 2016.11.07.)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개정 2016.11.07.)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개정 2015.09.09.)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

제78조(하자보수이행절차)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74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제79조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회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11.07.)

제79조(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목적물의 설계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한다.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 등이 입회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의 보

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11.07.)

②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입조치하지 아니하고 수입·지출 외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한다.(개정 2016.11.07.)

③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한 절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1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11.07.)

제81조(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개정 2016.11.07.)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82조에 따라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 체결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와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하고,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과 제7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제82조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2.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82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동일한 계약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경우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제2항 제2호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7.)

④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증가액에서 제8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⑤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제2항을 적용해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2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제2항을 적용할 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⑦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일 때에는 그 자재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⑧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8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제81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1.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 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3.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②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산식 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그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은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④제81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의하여 산출한다.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정·허가 또는 인가한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개정 2016.11.07.)

가. 정부

나. 지방자치단체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거래실례가격 또는「통계법」제15조의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에 따라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개정 2016.11.07.)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수와 유사한 지수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수(개정 2016.11.07.)

⑤제8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

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회사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⑥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제87조 제3항·제4항 또는 제6항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 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 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 선금급률

⑦제1항에 따라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할 때에 적용한 방법과 달리할 수 있다.

⑧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⑨사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률의 산출요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입찰참가자가 제25조 제6항 제1호 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직접 작성한 부분(제2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

에 누락·오류 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③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 조정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 조정금액이 원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증감된 공사양의 단가는 제25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회사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낙찰률)] × 50/100

⑤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 회사의 설계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개정 2016.11.07.)

⑥제5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6.11.07.)

⑦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25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여 산출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11.07.)

⑧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신설 2016.11.07.)

⑨제조·용역 등의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조항이동 2016.11.07.)

제84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1조 제1항에 따라 공사·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81조와 제83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개정 2016.11.07.)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83조 제7항을 준용한다.

제85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운송·보관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있어서는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당해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이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6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9.09.)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제87조(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임차·운송·보관 또는 전기 ·가스·수도의 공급 등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제1항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1.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

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개정 2015.09.09.)

③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덧붙여 적고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 공사금액(제81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④장기물품제조등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구축사업과 함께 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을 포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5.09.09.)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차수별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제조 등의 계약단가에 따라 결정한다.

⑥「회계규정」제123조에 따른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서는 총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7.)

제88조(단년도 차수계약)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같은 회계연도 내에 전체 예산의 확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설계서·규격서 등이 미리 확정된 경우에는 총액으로 입찰하여 낙찰된 자와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시기별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시기별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된 금액을 계약서에 덧붙여 적되, 예산의 범위에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2차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금액에서 1차 계약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제89조(단가계약)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의 제조·구매·수리·가공
2. 시설물의 보수·복구
3.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4. 그 밖에 공급·사용·임차·매매 등의 계약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 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이거나「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이미 단가계약을 체결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제90조(개산계약)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2. 시험·조사·연구용역의 계약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과의 관계 법령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 등의 계약

②사장은 제1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1조(개산계약의 정산)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의 낙찰율(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개산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하여야 한다.

제92조(종합계약)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과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함께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사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약의 체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합계약의 체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3조(공동계약)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의 계약에 있어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행하거나 분담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도급의 유형,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 에 따른다.(개정 2016.11.07.)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6.11.07.)

④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분담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16.11.07.)

⑤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6.11.07.)

⑥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1.07.)

⑦제6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개정 2015.09.09, 조항이동 2016.11.07.)

⑧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식기반사업 중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복합 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조항이동 2016.11.07.)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조항이동 2016.11.07.)

제94조(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계약할 때 계약목적물의 특성·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의2 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6.11.07.)

제95조(지연배상금)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95조의2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1.07.)

②제1항의 경우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 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3조 제2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도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신설 2017.09.15.)

④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지급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조문이동 2017.09.15.)

제95조의2(지연배상금률) 제95조 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 1000분의 0.5(개정 2017.09.15.)
2. 물품의 제조·구매 : 1000분의 0.8(개정 2017.09.15.)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 그 밖의 계약 : 1000분의 1.3(개정 2017.09.15.)
4.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 1000분의 2.5(개정 2017.09.15.)

[본조 신설 2016.11.07.]

제96조(계약의 해제·해지)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6.11.07.)`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회사에 수입 조치하는 경우(개정 2016.11.07.)
2. 제95조 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6.11.07.)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11.07.)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신설 2016.11.07.)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7.)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7.)

④제95조 제1항에 따라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지 않는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96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제외 사유 등) 제9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계약의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회사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16.11.07.]

제9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사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제5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09.)

②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 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개정 2016.11.07.)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조사설계 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50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86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7.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개정 2016.11.07.)

8. 입찰(제38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계약에 관한 서류(제47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서류를 제출한 자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개정 2016.11.07.)

11.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제47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한다.)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 행을 방해한 자

13.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4. 정당한 이유 없이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5.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6.「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개정 2016.11.07.)

17.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있어「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0조 제4항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자

18.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19.「전자정부법」제2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될 경우 회사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개정 2016.11.07.)

20.「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계약 중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개정 2015.09.09.)

21. 삭제(2016.11.07.)

③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2]로 정한다.(개정 2016.11.07.)

④제93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개정 2016.11.07.)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발생시킨 조합원에 대해서도 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사장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7.)

1. 업체(상호)명·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등)·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관계 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 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⑧사장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제한기간에는 회사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7.)

⑨ 삭제(2015.09.09.)

⑩사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조항이동 2016.11.07.)

⑪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1.07.)

⑫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통보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11.07.)

제 7 장 보 칙

제98조(이의신청) 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추정

가격 30억원(전문공사 및 기타공사의 경우 3억원),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5억원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는 회사 사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6.11.07.)

1.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2.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3.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②이의신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사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6.11.07.)

제99조(계약의 특례) 물품구매·수리·용역금액이 건당 추정가격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및 견적서 첨부를 생략하고 세금계산서(영수증)로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22.04.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공 종	하자담보 책임기간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가. 교량	
(1)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2) 길이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3) 교량 중 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1)" 및 "(2)"외의 공종	2년
나. 터널	
(1)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2) "(1)" 외의 시설	5년
다. 철도	
(1) 교량 및 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1)" 외의 시설	5년
라. 공항 및 삭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1)" 외의시설	5년
마. 항만·사방 또는 간척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1)" 외의 시설	5년
바. 도로(암거·측구를 포함한다)	2년
사. 댐	
(1) 본체 또는 여수로 부분	10년
(2) "(1)" 외의 시설	5년
아. 상·하수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관로매설 또는 기기설치	3년
자. 관개수로 또는 매립	3년
차. 부지정지	2년
카.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	2년
타. 발전·가스 또는 산업설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 설치	5년
(3) "(1) 및 (2)" 외의 시설	3년
파. 기타 토목공사	1년
하. 건축	
(1)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 시설 또는 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기둥 또는 내력벽	10년
(2) 대형공공성 건축물중 기둥, 내력벽 외의 주요 구조부 또는 "(1)" 외의 건축물중 주요 구조부	5년

(3) 건축물중 "(1)" 및 "(2)"와 거목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 부분	1년
거. 전문공사	
(1) 실내의장	1년
(2) 토공	2년
(3) 미장 또는 타일	1년
(4) 방수	3년
(5) 도장	1년
(6) 석공사 또는 조적	2년
(7) 창호설치	1년
(8) 지붕	3년
(9) 철물(가목 내지 아목 및 자목 내지 하목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년
(10) 철근콘크리트(가목 내지 아목 및 자목 내지 하목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를 제외한다)	3년
(11) 급배수 · 공동구 · 지하저수조 · 냉난방 · 환기 · 공기조화 · 자동제어 · 가스 또는 배연설비	2년
(12) 승강기 또는 인양기기설비	3년
(13) 온실설치공사	2년
(14) 보링	1년
(15) 건축물조립공사(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하목에 따른다)	1년
(16) 판금	1년
(17) 보일러설치	1년
(18) 포장	2년
(19) "(11)" 및 "(17)" 외의 건물 내 설비	2년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가. 발전설비공사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1)" 외의 시설공사	3년
나. 터널식 및 개착식전력구 송배전설비공사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2) "(1)" 외의 송전설비공사	5년
(3) "(1)" 외의 배전설비공사	2년
다. 지중 송배전설비공사	
(1) 송전설비공사(케이블공사 및 물밑송전설비공사를 포함한다)	5년
(2) 배전설비공사	3년
라. 송전설비공사	3년
마. 변전설비공사(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를 포함한다)	3년
바. 배전설비공사	
(1) 배전설비 철탑공사	3년
(2) "(1)" 외의 배전설비공사	2년
사.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1년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가. 터널식 또는 개착식 등의 통신구공사	5년
나.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중 케이블설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를 제외한다), 관로공사, 철탑공사, 교환기설치공사, 전송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3년
다. 가목 및 나목의 공사 외의 공사	1년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가. 피난기구 · 유도등 · 유도표지 · 비상경보설비 · 비상 조명등 ·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나.자동식소화기 ·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 소화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제외한다)	3년
5.「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가. 성곽	
(1)석성(石城)	
(가)화강석 등을 방형 형태로 다듬어 쌓은 구조	5년
(나)자연상태의 돌을 사용하여 쌓은 구조	3년
(2)토성(土城), 혼축성(混築城)	2년
(3)전축성(塼築城)	3년
(4)목책성(木柵城)	1년
나. 탑 · 석조물	
(1)석불(石佛) · 부도(浮屠) · 비석(碑石) · 석등(石燈) · 당간지주(幢竿支柱) · 지석묘(支石墓) · 석빙고(石氷庫) · 석탑(石塔) · 석교(石橋) 등	5년
(2) 전탑(塼塔)	3년
(3) 새로운 재료로 교체한 석재부(石材部)	7년
다. 목조건축물	
(1) 지붕	
(가)산자(橵子) 또는 개판(蓋板) 이상의 기와지붕	3년
(나)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너와지붕	2년
(다)억새 등을 이용한 선사시대 움집	2년
(라)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초가지붕	1년
(2) 목부재(木部材)	
(가)기둥, 창방, 대들보, 도리 등 주요 구조재	3년
(나)그 밖의 구조재	2년
(3) 목조건축물의 수장재(修粧材)	1년
(4) 기초 및 기단	
(가)정(井)자형 장대석 기초	10년
(나)강회잡석 적심기초, 화강석 가공주초	7년
(다)도드락다듬 이상의 석조 기단 · 월대의 지대석	5년
(라)그 밖의 기초 및 기단	3년
(5) 미장 및 아궁이 · 굴뚝 · 방고래 등 구들과 관련되는 시설의 수리	2년
(6) 건축물의 단청(벽화 및 불화를 포함한다)	2년
라. 담	
(1) 사괴석(四塊石) 담장의 장대지대석	5년
(2) 그 밖의 사괴석담	3년
(3) 돌담 · 자연석담 · 판축담 · 토담 · 전축담 · 와편담	2년
마. 분묘	
(1) 봉분시설(잔디심기를 제외한다)	2년
(2) 구조부	
(가)적석총(積石塚) · 석곽묘(石槨墓)	5년
(나)전축분(塼築墳)	3년
(다)목곽묘(木槨墓)	1년
(3) 병풍석(屛風石)	3년

	2년
	2년
바. 도로	1년
(1) 암거 · 배수로 · 측구 · 맨홀	
(2) 포장	2년
(가)박석 · 포방전	3년
(나)마사토 · 강회다짐 · 기타 혼합토 등	
사. 철물	2년
(1)장식철물 · 보호철물 · 관리철물	3년
(2)구조철물 · 보강철물	2년
아. 조경 · 식물보호 · 발굴지정비 · 벽화 등	5년
(1)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5년
(2)식물보호	
(3)발굴지 정비	
(4)불상개금 · 도금 · 탱화 · 옷칠 등	1년
자. 그 밖의 문화재와 문화재보호 · 보강시설(전통한옥양식건축물 또는 보호각, 보호시설의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된 내력벽, 기둥이나 주요 구조부)	
6.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 · 이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별표 2] **(개정 2015.09.09, 2017.09.15)**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97조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1. 규정 제9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를 한 자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1년10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11개월 이상 1년1개월 미만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2. 규정 제9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가. 공사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1년10개월 이상 2년 이하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11개월 이상 1년1개월 미만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나. 물품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1년10개월 이상 2년 이하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11개월 이상 1년1개월 미만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3. 규정 제9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1년10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설계서 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11개월 이상 1년1개월 미만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 및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4. 규정 제9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11개월 이상 1년1개월 미만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다. 건설업미등록자에게 하도급한 자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라.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마. 재하도급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사. 하도급 거짓 통보자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5. 규정 제9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름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1년10개월 이상 2년 이하
6. 규정 제97조제2항제4호 또는 제20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고의에 의한 경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7. 규정 제97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 외의 불특정다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을 손괴한 자	1년10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1년10개월 이상 2년 이하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1년5개월 이상 1년7개월 미만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11개월 이상 1년1개월 미만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인 경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8. 규정 제97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1년10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삭제	삭제
다. 규정 제50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라. 규정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마. 규정 제93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하고,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바.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1) 계약이행 지체일수가 10일 이상인 자 또는 납품 지체횟수가 3회 이상인 자	11개월 이상 1년1개월 미만
2) 계약이행 지체일수가 20일 이상인 자 또는 납품 지체횟수가 5회 이상인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9. 규정 제97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들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10. 규정 제97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11. 규정 제97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12. 규정 제97조제2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	
가. 2억 원 이상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2년
나.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1년
다.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6개월
라. 1천만 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3개월
13. 규정 제97조제2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4. 규정 제97조제2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15. 규정 제97조제2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16. 규정 제97조제2항제14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17. 규정 제97조제2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18. 규정 제97조제2항제16호에 해당하는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19. 규정 제97조제2항제17호에 해당하는 자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20. 규정 제97조제2항제18호에 해당하는 자	
가. 회사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회사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21. 규정 제97조제2항제19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24개월
나.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12개월

비고

1.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 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별표 3] (신설 2016.11.07.)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회사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임대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회사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제16호서식〕 을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함),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회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확인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식회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면 계약부서와 발주부서의 장이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식회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제16호의2서식〕 를 교부한다.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서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제16호서식〕 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④「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 제한 대상자(철도운영기관 임원)를 동 법령에 위반하여 고용한 업체는 회사에

서 시행하는 입찰에 2년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⑤ 물품납품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한 업체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회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⑥「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 업체가 관련법령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자(철도운영기관 임원)를 승인절차를 거쳐 고용한 경우(이하'제한대상자'라 한다) 에도 전관예우를 차단을 위해 회사에서 시행하는 기술용역(설계·감리) 선정평가시 불이익(-4점 이내)을 받게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사업 세부 평가기준에 의한다.
1. 입찰공고일 현재 제한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 : -4점
2. 입찰공고일로 부터 최근 1년이내 제한대상자를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 -3점
3. 입찰공고일로 부터 최근 2년이내 제한대상자를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 -2점
4. 입찰공고일로 부터 최근 3년이내 제한대상자를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 -1점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입찰참가자격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7조(손해배상) ①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한다.

[별표 4] (신설 2016.11.07.)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 · 임대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식회사 처분을 받은 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①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②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③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회사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손해배상) ①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회사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회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09.09.)**

<table>
<tr><td colspan="4">입 찰 참 가 자 격 등 록 증</td><td>처리기간
즉 시</td></tr>
<tr><td rowspan="3">신청인</td><td>상호 또는 법인명</td><td></td><td>법인등록번호</td><td></td></tr>
<tr><td>주 소</td><td></td><td>전 화 번 호</td><td></td></tr>
<tr><td>대 표 자</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 rowspan="3">등록사항</td><td>등 록 관 서</td><td></td><td>등 록 일</td><td>. . .</td></tr>
<tr><td>유 효 기 간</td><td colspan="3">. . . 부터 . . . 까지</td></tr>
<tr><td>등록 종목
(세부 품목)</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위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 귀 발주기관(발주자)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인)

귀하</td></tr>
<tr><td colspan="5">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 . .
사장 (인)</td></tr>
<tr><td colspan="4">구비서류: 없음</td><td>수수료
없 음</td></tr>
<tr><td colspan="5">※주의사항
1. 이 증서내용이 변경된 경우 발주기관의 정정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2. 기재사항 중 추가 또는 정정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td></tr>
</table>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09.09.)**

	일 반 (제한) 지 명 입 찰 참 가 통 지 서			
입찰참가자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내용	입 찰 건 명			
	현 장 설 명	일시:	장소:	
	입 찰	일시:	장소:	
	입찰등록마감일시	년 월 일 시까지		
	서 류 제 출 처	(전화번호:)		

우리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에서 집행하는 위 입찰에 귀사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여 통보하오니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마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 .

서 울 도 시 철 도 그 린 환 경 (주)

사 장 또는

성명 (인)

계 약 담 당 자

귀하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09.09.)**

<table>
<tr><td colspan="5">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td><td>처리기간
즉시</td></tr>
<tr><td rowspan="3">신청인</td><td>상호 또는 법인명</td><td></td><td>법인등록번호</td><td></td><td rowspan="3"></td></tr>
<tr><td>주 소</td><td></td><td>전 화 번 호</td><td></td></tr>
<tr><td>대 표 자</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 rowspan="2">입찰개요</td><td>입 찰 공 고
(지 명)번 호</td><td>제 호</td><td>입 찰 일</td><td>. . .</td><td rowspan="2"></td></tr>
<tr><td>입 찰 건 명</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입찰보증금</td><td>납 부</td><td colspan="4">· 보증금률: %
· 보증금: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td></tr>
<tr><td>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td><td colspan="4">·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사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td></tr>
<tr><td colspan="2">대리인</td><td colspan="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td></tr>
<tr><td colspan="6">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사의 일반(제한·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td></tr>
<tr><td>구비서류</td><td colspan="4">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td><td>수수료
없 음</td></tr>
<tr><td colspan="6">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td></tr>
</table>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09.09.)**

<table>
<tr><td colspan="4">입 찰 참 가 신 청 증</td><td>처 리 기 간
즉 시</td></tr>
<tr><td rowspan="2">입
찰
개
요</td><td>입 찰 공 고
(지 명)번 호</td><td></td><td>입 찰 일</td><td>. . .</td></tr>
<tr><td>입 찰 건 명</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신
청
인</td><td>상호 또는 법인명</td><td></td><td>법인등록번호</td><td></td></tr>
<tr><td>주 소</td><td></td><td>전 화 번 호</td><td></td></tr>
<tr><td>대 표 자</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 colspan="5">귀하는 이번에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우리 회사의 일반(제한·지명)입찰에 참가신청을 마친 자임을 증명합니다.

. . .

서 울 도 시 철 도 그 린 환 경 (주)

사장 또는
계 약 담 당 자 성명 (인)

귀하</td></tr>
</table>

210㎜ × 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09.09.)**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 . .
	건 명			
	금 액	금 원정(₩)		
	준공(납품)연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공사(물품구매·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에 응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용역)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까지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산출내역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입찰자 (인)

귀하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09.09.)**

입 찰 서

1. 공고번호: 제 호
2. 입찰건명:
3. 준공(납품)연월일: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공사(물품구매·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에 응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용역)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오른쪽에 표시된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까지 공사(물품·용역)를 완공(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입찰 번호		
백	십	일
⓪	⓪	⓪
①	①	①
②	②	②
③	③	③
④	④	④
⑤	⑤	⑤
⑥	⑥	⑥
⑦	⑦	⑦
⑧	⑧	⑧
⑨	⑨	⑨

입 찰 금 액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⓪	⓪	⓪	⓪	⓪	⓪	⓪	⓪	⓪	⓪	⓪	⓪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첨부: 산출내역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상호 또는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대표자: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작성 시 유의사항>

1. 필기구: 컴퓨터용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합니다.
2. 정확하게 표기합니다.
   - 바르게 표기한 것: ●
   - 틀리게 표기한 것: ⓥ◐①ⓧ⊙
3. “입찰번호”란에는 입찰 참가신청 시 부여된 번호를 표기합니다.
4. 매 금액단위란은 1칸만 표기합니다(빈칸으로 두거나 2칸 이상 표기하지 않습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09.09.)**

공 사 도 급 표 준 계 약 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 주 처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계 약 상 대 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주 소 · 전 화 번 호
계약내용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금 원정(₩)
	총공사부기금액	금 원정(₩)
	계 약 보 증 금	금 원정(₩)
	현 장	
	지연배상금률	%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 . . ~ . . .
	착 공 연 월 일	
	준 공 연 월 일	
	그 밖 의 사 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

공 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담보책임 존속기간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사장(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공사 입찰유의서 1부
2. 공사계약 일반조건 1부
3. 공사계약 특수조건 1부
4. 설계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

. . .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 (인)
계 약 상 대 자 (인)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09.09.)**

물품제조·구매 등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서	발 주 처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계 약 상 대 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표자
계약내용	물 품 명	
	계 약 금 액	금 원정(₩)
	총제조부기금액	금 원정(₩)
	계 약 보 증 금	금 원정(₩)
	지연배상금률	%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납 품 일	. . . ~ . . .
	납 품 장 소	
	그 밖 의 사 항	

사장(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1부
2.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1부
3.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4. 규격 및 내용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

. . .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 (인)
계약상대자 (인)

물 품 내 역 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257㎜ × 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09.09.)** (앞쪽)

용역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서	발주처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계 약 상 대 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대표자
계약내용	용 역 명	
	계 약 금 액	금 원정(₩)
	총용역부기금액	금 원정(₩)
	계 약 보 증 금	금 원정(₩)
	지연배상금률	%
	계 약 기 간	. . . ~ . . .
	위 치	
	그 밖 의 사 항	

사장(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용역 입찰유의서 1부
2. 용역계약 일반조건 1부
3.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4. 과업내용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

. . .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 (인)
계약상대자 (인)

210㎜×297㎜
(신문용지 54g/㎡)

(뒤 쪽)

용 역 내 역 서		
용 역 명	규격·단위 또는 세부사항	금 액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09.09.)**

계 약 보 증 금 납 부 서

입 찰 번 호	제 호	입찰연월일	. . .
계 약 건 명			
계 약 번 호	제 호	계약(예정)연월일	
계 약 금 액	금 원정(₩)		
계약보증금액	금 원정(₩)		
보증금 납부방법			
계약이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		

위의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 . .

상호 또는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대 표 자: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귀하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09.09.)**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

입 찰 번 호	제 호	입찰연월일	. . .
계 약 건 명			
계 약 번 호	제 호	계약(예정)연월일	
계 약 금 액	금 원정(₩)		
계약보증금액	금 원정(₩)		
보증금 납부방법			
계약이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		

위의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 . .

상호 또는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대 표 자: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귀하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09.09.)**

하 자 보 수 보 증 금 납 부 서

입찰번호	제 호	입 찰 연 월 일	. . .
계약건명			
계약번호	제 호	준 공 연 월 일	
계약금액	금 원정(₩)		

하 자 보 수 보 증 금 납 부 내 역

공 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금액	담보책임 존속기간
	원정	( )%금 원정	. . . ~ . . .
	원정	( )%금 원정	. . . ~ . . .
	원정	( )%금 원정	. . . ~ . . .
보증금 납부방법			

위의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상호 또는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대 표 자: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귀하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09.09.)**

각 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보증금으로 납부한 주식은 위조가 아니며, 만일 해당 주식의 진위에 관하여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 . .

상호 또는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대 표 자: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기관명: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귀하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09.09.)**

서 울 도 시 철 도 그 린 환 경 (주)

우편번호・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문서번호:
발 신 일:
수 신:
참 조:
제 목: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

부정당업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영 업 종 목 (세 부 품 목)		면허・등록번호 등	
제재내용	제 재 근 거			
	해약연월일			
	제재연월일		만료연월일	
	제 재 기 간	. . . ~ . . .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보증금의 처리결과)
(그 밖의 참고사항)

사 장 (인)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15호서식]

물 품 납 부 서

불출증번호

증빙번호

계 약 일 자	20OO 년 O 월 O 일	계 약 번 호	제 호
계약납품일자	20OO 년 O 월 O 일	체 납 일 수	OOO 일간

아래 물품을 납품코자 하오니 인수하여 주시앞 20OO 년 O 월 O 일	아래 물품을 검사결과 합격판정이 되었음을 증명함 20OO 년 O 월 O 일 소 속 OOOO 검사관 OOO
수요기관 물품출납공무원 영수인에 의하여 아래 물품이 납품되었음을 확인함 20OO 년 O 월 O 일 조달청 확인자 O O O ㊞	아래 물품을 정히 영수함 20OO 년 O 월 O 일 소 속 OOOO 출납공무원 O O O ㊞

순번	품 명	자체	지질	면	단위	소요 부수	원지 매수	단가	금액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6.11.07.)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에서 시행하는 ○○○ ○○○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서 약 자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6호2서식] (신설 2016.11.07.)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식회사 교부용)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 ○○○○)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위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되는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련 직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옴부즈만 연락처 】

- **사 무 실 : ☎ (02) 2133-3149**
  FAX 2133-1310

20○○. . .

담당처장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7호서식] (신설 2016.11.07.)

대가 청구서

건　　명 :

청구금액 : 금　　원(금　　원)

위 금액을 청구하오니 아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계좌)

거 래 은 행	지점
계 좌 번 호	
통 장 명 의	

20　년　　월　　일

청 구 인　주　　소 :

청 구 인　상　　호 :

청 구 인　대 표 자 :　　㊞

청 구 인　법인등록번호 :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귀하